

[p.186]

12. 건축법령상 '주요구조부'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㉠ 지붕틀 ㉡ 주계단 ㉢ 사이기둥 ㉣ 최하층 바닥

- ① ㉠ ② ㉠, ㉡ ③ ㉡, ㉣ ④ ㉠, ㉡, ㉣ ⑤ ㉠, ㉡, ㉢, ㉣

[p.179]

03.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? (단,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)

- ①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m²인 15층의 백화점
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인 10층의 식물원
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m²인 16층의 호텔
 ④ 의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m²인 5층의 한방병원
 ⑤ 운동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인 12층의 체육관

[p.179]

02.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.
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.
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.
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.

[p.187]

13.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은?

-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²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③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 ④ 주계단·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·해체하거나 수선·변경하는 것
 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[p.185]

09.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.
- ②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대수선이다.
- ③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다.
- ④ 채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.
- ⑤ 기존 5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.

[p.184]

08. 다음의 건축법령상 축조신고대상 공작물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, 기념탑
- ②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
- ③ 높이 6m를 넘는 광고탑, 광고판
- ④ 바닥면적 30m²를 넘는 지하대피호
- ⑤ 높이 8m(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함)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

[p.183]

07. 건축법령상의 대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지라 함은 「건축법」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.
- ②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.
- ③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.
- ④ 2필지 이상에 걸쳐서 도시·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그 도시·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.
- ⑤ 서로 인접하고 있는 2필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서로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.

[p.189]

17.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.
-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③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⑤ 공장을 자동차관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[p.188]

15.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
- ①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주거업무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④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용도변경 허가·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.

[p.180]

〈대표유형〉 다음 중 건축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?

- ① 임시지정문화재
- ② 항만시설
- ③ 야영장시설
- ④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
- ⑤ 철도역사

[p.190]

19. 건축법령상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(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)이 아닌 지역은 「건축법」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대지와 도로의 관계
- ② 건축물의 높이제한
- ③ 건축선의 지정
- ④ 대지의 분할제한
- 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

[p.198]

14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거부 및 허가제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주무부장관은 국방, 문화재보존,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·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제한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⑤ 위 ④의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[p.195]

07.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대상으로 틀린 것은?

-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0m²인 개축
- ②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
-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
-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
- ⑤ 건축물의 높이를 5m 증축하는 행위

[p.196]

10.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(이하 “건축신고”)를 하려고 한다.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
-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.
- 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.

[p.196]

11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
- ① 바닥면적이 각 80m²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²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m²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.

[p.200]

18.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? (단, 조례와 ‘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별법’은 고려하지 않음)

-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
-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m²인 것
-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m²인 것
-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²인 것
- ⑤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

[p.200]

16.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해복구, 흥행, 전람회,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,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.
- ② 위 ①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- ③ 위 ①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.
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야 한다.
- 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.

[p.202]

01. 면적이 1,000m²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,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? (단,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
- ①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m²인 수련시설
- ②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,000m²인 물류시설
- ③ 연면적의 합계가 1,000m²인 공장
- ④ 연면적이 500m²인 축사
-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m²인 농어가주택

[p.204]

05.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?

- ①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.
- ② 판매시설(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)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공개공지에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의자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1.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⑤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.

[p.207]

09. 건축법령상 건축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것으로,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.
- ②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만,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.5m 이하에 있는 출입구, 창문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[p.209]

〈대표유형〉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. 그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기준 내용이 틀린 것은?

- ①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
- ② 연면적이 300m² 이상인 건축물
- ③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
- ④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
-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

[p.210]

〈대표유형〉 건축법령상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내용이다. 틀린 것은?

-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2,000m²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.
- ④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·광고탑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.
- 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(건축물의 피난·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)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
[p.216]

09.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아닌 것은?

- ① 지하층의 면적
- ② 지상층의 주차용(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)으로 쓰는 면적
- ③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
- ④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
- ⑤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m² 이상인 건축물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

[p.217]

〈대표유형〉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면적 미만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. 그 연결이 옳은 것은?

- ① 전용주거지역 : 100m² ② 근린상업지역 : 200m² ③ 준공업지역 : 200m²
 ④ 자연녹지지역 : 200m² ⑤ 기타지역 : 100m²

[p.212]

01.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㉠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(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)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.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.
 ㉡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(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한 높이)로 한다.
 ㉢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.
 ㉣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,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.

- ① ㉠, ㉡ ② ㉠, ㉢ ③ ㉡, ㉣ ④ ㉡, ㉣ ⑤ ㉢, ㉣

[p.213]

03.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,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, 전기실, 어린이놀이터,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②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(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.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)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 ③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.
 ④ 처마높이는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·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.
 ⑤ 층고란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.

[p.219]

12.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「건축법」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
-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적용된다.
-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(棟)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적용된다.
- ③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9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
-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- 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[p.222]

04.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·군·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[p.224]

01.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
- ㉠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
- 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

- ㉢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
- ㉣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

① ㉠ - ㉢ - ㉡ - ㉣

② ㉠ - ㉡ - ㉣ - ㉢

③ ㉢ - ㉠ - ㉡ - ㉣

④ ㉡ - ㉠ - ㉢ - ㉣

⑤ ㉡ - ㉣ - ㉢ - ㉠

페이지	문제 정답	페이지	문제 정답	페이지	문제 정답	페이지	문제 정답
p.186	12. ③	p.179	03. ③	p.179	02. ①	p.187	13. ②
p.185	09. ⑤	p.184	08. ③	p.183	07. ①	p.189	17. ⑤
p.188	15. ④	p.180	<대표> ①	p.190	19. ②	p.192	02. ④
p.193	04. ②	p.194	05. ②	p.198	14. ③	p.195	07. ⑤
p.196	10. ①	p.196	11. ②	p.200	18. ③	p.200	16. ②
p.202	01. ②	p.204	05. ④	p.207	09. ②	p.209	<대표> ②
p.210	<대표> ①	p.216	09. ④	p.217	<대표> ④	p.212	01. ②
p.213	03. ⑤	p.219	12. ②	p.222	04. ①	p.224	01. ④

“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수업용 프린트이므로 별도의 해설은 제공되지 않고 정답만 제공되며,
수업시간에 전체 문제에 대한 풀이가 진행됩니다.”

— 오시훈교수—